

[별표 6]

하수처리사업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제111조제2항 관련)

구 분	위 치	관 할 구 역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서울 성동구 송정동 73	노원,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강북, 광진 전역, 종로, 성동, 중구일부
탄천하수처리사업소	서울 강남구 일원동 580	강동, 송파 전역, 강남, 서초, 하남시 일부
가양하수처리사업소	서울 강서구 마곡동 91	영등포, 관악, 동작, 구로, 양천, 강서, 금천 전역, 강남, 서초, 광명시일부
난지하수처리사업소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	마포, 용산, 은평, 서대문 전역, 종로, 중구, 성동일부

[별표 7]

근로청소년회관의 위치(제114조제2항 관련)

구 분	위 치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산 78-5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16,679명”을 “16,351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11,401명”을 “11,079명”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6,679명”을 “16,351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11,531명”을 “11,073명”으로 하며, 동조제2호 중 “4,593명”을 “4,746명”으로 하고 동조제4호 중 “223명”을 “20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公共施設設置및管理運營委託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여성정책관(여성개발담당관) 시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성정책관 (여성개발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어린이집 ○ 시립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소년의집 - 시립동부아동상담소 ○ 서부여성발전센터
--------------------	--

별표1 주관국(과)란 중 “보건복지국(청소년과)”을 “문화관광국(체육청소년과)”으로 하고, 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p>	<p>○ 청소년복지시설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시립구로청소년센터</p>	<p>-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시립신림청소년센터 -시립청소년종합상담실 -시립남부청소년회관 -시립동부청소년회관 -시립청소년사업관</p>
---------------------------	--	---

별표2 중 여성정책관(여성개발담당관) 사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여성정책관</p>	<p>○ 서울특별시어린이집 관리운영 ○ 시립소년의집 관리운영 ○ 시립동부아동상담소 관리운영 ○ 서부여성발전센터 관리운영</p>
--------------	--

별표2 주관국(과)란 중 “보건복지국(청소년과)”을 “문화관광국(체육청소년과)”으로 하고, 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p>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p>	<p>○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시립구로청소년센터 관리운영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관리운영 ○ 시립신림청소년센터 관리운영 ○ 시립청소년종합상담실 관리운영 ○ 시립남부청소년회관 관리운영 ○ 시립동부청소년회관 관리운영 ○ 시립청소년사업관 관리운영</p>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